

지방세법 시행령

[시행 2025. 5. 27.] [대통령령 제35544호, 2025. 5. 27., 일부개정]

- 제28조의6**(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)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(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)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.
-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“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20. 12. 31., 2024. 12. 31.>
1.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
 2.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 3. 삭제 <2024. 12. 31.>

[본조신설 2020. 8. 12.]